# 한국수도협회정관

제정시행 (1974. 2. 1)
개 정 (1978.11. 29)
개 정 (1980. 1. 9)
개 정 (1980.11. 27)
개 정 (1986. 7. 8)
개 정 (1991. 5. 15)
개 정 (1993. 1. 12)
개 정 (1994. 5. 13)
개 정 (1995. 4. 28)
전문개정 (1996. 12. 5)

## 제1장 총 칙

제 1조(명칭) 본 협회는 수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한국수도협회(이하 "협회" 라 한다)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.W.W.A(Korea Water Works Association)로 한다.

제 2조(목적) 협회는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므로써 우리나라 수도부문의 선진화와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(사무소)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
제 4조(사업) 협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상 하수도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수도에 관한 전문기술 및 수도사업 경영방법 향상을 위한 조사, 연구와 그 보급
2. 수도에 관한 기술지원 및 회원 상호간 경험, 정보, 기술의 전파와 교류
3. 수도에 관한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, 연수
4. 국고보조등 수도시책에 대한 청원, 건의 및 자문에 대한 응답
5. 수도관계 시설기준, 표준시방서 등에 관한 연구 및 보급
6. 수도기자재의 규격 연구 및 단체표준 제정과 품질 인증사업
7. 수도에 관한 홍보와 협회지 및 수도관련도서의 발간
8. 수도에 관한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교류
9. 회원 및 수도사업 종사자의 복리, 후생사업
10. 기타 수도와 관련된 사업

## 제2장 회 원

제 5조(회원의 구성)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(수도사업자)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자
2. (단체회원) 수도사업자 관리기관인 도(道) 및 수도관련 단체
3. (기업체회원) 수도관련 기자재 생산 · 판매업체, 설계 · 시공 · 감리업체, 저수조청소업체 및 기타 수도관련 기업체
4. (개인회원) 상기 1, 2, 3호의 종사자 및 수도관련 학술단체, 교육기관,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수도에 관한 학식, 경험이 풍부한 자

③ 협회의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대학의 수도관련학과 학생
2. 기타 본 협회 활동에 관심 있는 자

제 6조(회원의 대행) 수도사업자 회원과 단체회원 중 도(道)는 수도관련 실무부서의 장이 회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.

회원으로서 직책과 관련된 대표자 또는 대행자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후임자가자 동 승계한다.

제 7조(권리) ①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
1. 협회의 모든 권익의 향유
2. 협회 임원 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3.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

② 준회원은 제1항 2호 및 3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.

제 8조(의무)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.

1.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

2. 회원의 품위를 보전할 의무
3. 회비를 납부할 의무
4.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

제 9조(포상) ① 수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협회운영에 유공한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포상할 수 있다.

② 회원이 아닌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가 있을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.

제10조(징벌) 회원으로서 수도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협회의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케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

## 제 3 장 임 원

제11조(임원) ①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10인 이내
3. 이사 40인 이내(회장 및 부회장 포함)
4. 감사 2인 이내

② 부회장 1인 및 이사 약간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.

③ 이사는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한다.

제12조(임원의 선임) ① 회장은 회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며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감사는 회원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③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④ 특별시, 광역시, 도(道), 한국수자원공사는 당연직 이사로 하고 당연직 이사 이외의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회장단에서 선출한다.

⑤ 제6조의 회원대행자를 전항의 당연직 이사 및 기타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.

⑥ 상임임원은 임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
제13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.

제14조(직무)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업무를 지휘 · 통솔한다.

③ 회장 유고시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상임이사의 분담 업무는 회장이 지정하고 상임이사는 소관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.

⑤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15조(고문) 협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
제16조(보수) ① 임원으로서 상임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상임 임원의 보수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 4 장 총 회

제17조(구성)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제18조(소집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상반기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
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장은 임시 총회의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
④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부의안건, 일시 및 장소를 표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9조(의결권) 회원의 의결권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20조(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정관의 개정
2. 이사회에서 심의 · 의결된 사업계획, 세입 · 세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
3. 회장 및 감사의 선출
4.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
5. 협회의 청산, 해산결의 및 기본자산 처분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및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
7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1조(의결방법)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22조(서면의결 등) ①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대리인에게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.

② 총회 의결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3조(회의록)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출석 이사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24조(보고) 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 결과는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 5 장 이 사 회

제25조(구성)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제26조(소집)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
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연서로 요구할 때

제27조(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,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부회장의 선출
3.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심의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사항
6.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
7. 고문위촉 및 지회, 위원회, 협의회 설치 승인
8.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9. 회원의 청원, 진정 및 복리에 관한 사항
10.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지출의 승인에 관한 사항
11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8조(의결방법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이사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② 의안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의결로 할 수 있다.

제29조(운영위원회) ①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하여 회장, 부회장 및 회장이 선임하는 약간명의 이사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1. 회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
2. 이사회에 제출할 의안의 예비심의
3.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자격심사
4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제2항 1호의 안건은 다음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.

## 제 6 장 업무기구 및 부설기관

제30조(업무기구) ① 협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기구를 둘 수 있다.

② 직제 및 업무분장 인사관리, 복무,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1조(부설기관) ① 협회는 제4조에 규정된 각종 연구와 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

1. 연구원
2. 교육원

② 연구원과 교육원의 직제 및 담당업무, 인사관리, 복무,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2조(위원회등) ① 협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전문분야별 위원회와 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7장 재 정

제33조(회계년도)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.

제34조(자산구성)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기본재산은 협회가 취득하고 있거나 취득할 부동산 및 기금으로 한다.

③ 보통재산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하여 협회의 사업 및 운영경비에 충당한다.

1. 회 비
2. 보조금
3. 찬조금
4. 사업수입
5. 기타수입

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⑤ 협회의 재산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.

제35조(회비) ① 회비는 입회비와 년회비로 구분하며 부과방법 및 액수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② 년회비를 2년이상 미납한 회원은 그 자격이 정지되며 3년이상 미납한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36조(특별회계) 협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립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업과 기금, 적립금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할 수 있다.

제37조(감사) 감사는 협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2회 이상 감사한다.

제38조(예산의 추가경정)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 또는 경정할 수 있다. 다만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## 제8장 보 칙

제39조(정관개정) 회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

1.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한 때
2.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

② 협회의 정관개정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0조(회의의 의결) 협회의 모든 회의의 의사는 정관에서 특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41조(규정 및 규칙) ① 협회는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② 회장은 이 정관 및 제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(1974. 2. 1 제정시행)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법인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발기인은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당연히 회원이 되며, 설립등기 완료일까지 총회의 권한은 발기인회에서 선출된 이사로서 구성된 이사회가 각각 이를 대행하며 추인받지 아니한다.

### 부 칙

(1996. 12. 5. 개정 1997. . . 시행)

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정관 변경허가를 얻어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